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150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. 11. 28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개편 (‘22. 10. 7.자)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신설 부서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상임위원회 소관 조직 명칭 변경 및 신설(안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없음

다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2. 행정건설위원회

- 가. 새마포담당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관광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마. 재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바.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사.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아.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### 3. 복지도시위원회

- 가. 복지동행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도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다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라.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행정건설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마포1번가연구단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<u>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<u>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<u>관광일자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<u>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사. <u>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아. <u>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3. 복지도시위원회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행정건설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새마포담당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<u>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<u>관광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<u>재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<u>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사. <u>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아. <u>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3. -----</p>

가.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  
는 사항

나.·다. (생 략)

<신 설>

③ (생 략)

가. 복지동행국 -----

-----

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 
소관에 속하는 사항

③ (현행과 같음)

# 관 련 법 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7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